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	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임연우 (044-201-4616)
보도일시	2023년 1월 2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7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부 철도사고 책임 물어 “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”

- KTX · SRT 궤도이탈, 오봉역 사망사고 총 3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-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원희룡)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,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**한국철도공사**(이하 코레일)에 **과징금 18억원을 부과**한다고 밝혔다.

○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**행정처분 심의위원회*를 개최**하여 ①경부고속선 대전-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('22.1.5, 7.2억원),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('22.7.1, 7.2억원),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('22.11.5, 3.6억원)에 대한 **과징금**을 **의결**하였다.

*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, 과징금·과태료 등 심의(위원장:철도안전정책관)

○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.

<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(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)>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징금
1)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**가) 1명 이상 3명 미만**	법 제9조 제1항제3호	**3.6억원**
3)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**다) 20억원 이상**		**7.2억원**

□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**2022년도 코레일**의 **철도사고**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① 경부고속선 대전-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('22.1.5)

○ 2022.1.5.(수) 11: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-김천·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하여 **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**한 사고로, **철도안전법에 따라 7.2억원**(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)**의 과징금이 부과**되었다.

○ 이 사고와 관련하여,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(차륜)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*를 준수하지 않았고, 관제사(구로 관제센터)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.

* 주행거리 450,000km 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 실시(사고차량 49만km, 55만km)

②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('22.7.1)

○ 2022.7.1.(금) 15: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었고,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여 **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**한 사고로, **철도안전법에 따라 7.2억원**(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)**의 과징금이 부과**되었다.

○ 이 사고와 관련하여, 로컬 관제(역무 관제)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(열차 통과시 좌우진동)을 전달받았으나,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, 관제사(구로관제 센터)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. 또한,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,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,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.

③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('22.11.5)

○ 2022.11.5.(토) 20: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, **철도안전법에 따라 3.6억원**(1인 이상 사망에 해당)**의 과징금이 부과**되었다.

○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,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,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"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"이라며,

○ "1월 17일 발표한 「**철도안전 강화대책***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**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**"이라고 밝혔다.

* (주요 과제) ①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, ②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, ③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, ④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